
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<별지 제67호>에 따라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지정과 관련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시 일정거래를 제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1. 계산방법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67호> 제2-1조 2호, 제3-1조 및 제4-1조에 의하여 계산
2. 집합투자기구명 : 신한에쿼티알파일반사모혼합자산
3.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산정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(2022.07.14기준)

| 1) 파생상품종류        | 주가지수선물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) 종목명           | 2022-09 코스피200지수선물 | 2022-07 에코프로비엠개별선물 |
| 3) 포지션           | 매수                 | 매도                 |
| 4) 파생상품 위험평가액*   | 0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|
| 5) NAV           | 19,704,121,657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) 파생위험평가액/NAV** | 0%                 | 0%                 |

4. 기타 : 주가지수선물(2022-09 코스피200지수선물, 매수포지션), 개별주식선물((2022-07 현대차개별선물, 매도포지션) 매매

\* 이 공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관련이며, 자본시장법 및 집합투자규약등에서 제한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과는 다를수 있음(별표\*\*참조)
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제 67호> 제3-1조에 따라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(공시대상 아님)되는 파생상품(현물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 스왑거래) 거래 발생후 보유지속

\*\* 현재, 자본시장법 및 집합투자규약 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율은 약 7.77%입니다.